

의안번호	제 625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00. 7. .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영화 의원 외 3인
발의년월일	2000. 7. 19.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0. 7. 19.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외 3인

## 1. 제안이유

제천시의회 위원회 명칭중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행정기구인 총무사회국·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하여 전·후반기 형평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 위원회로 개정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국회법(제4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4조)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사본 1부. 끝.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호중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호중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1항중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된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第6節 委員會

第50條 (委員會의 設置) ① 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査·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特定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査·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 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51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 가 委任한 特定한 案件을 審査한다.

第52條 (委員會에서의 倚聽등) ① 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倚聽할 수 있다.

② 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倚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3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中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54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第7節 會 議

第55條 (議事定足數) ① 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 會議中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56條 (議決定足數) ① 議事는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7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8條 (議案의 發議) ① 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분의 1이상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改正 89·12·30>

國會法

產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4. 環境勞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勞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安全企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安全企劃部法 第 3 條第 1 項第 5 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  
· 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查에 관한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  
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第38條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情報委員會의 委員定數는 12人으로 한다. (改正 94.6.28)

第39條 (常任委員會의 委員) ①議員은 2이상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하 “常任委  
員”이라 한다)이 된다. (改正 94.6.28, 97.1.13)

②각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③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④國務總理 · 國務委員, 處의 長, 行政 各 院 · 部 · 處의 次官, 政務長官室補佐官  
기타 國家公務員의 職을 경한 議員은 常任委員을 辭任할 수 있다.

第40條 (常任委員의 任期) ①常任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  
選舉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  
후 2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改正 94.6.28)

②情報委員會의 委員은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議員의 任期동안 在任한다.  
(新設 94.6.28)

③補任 또는 改選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0.6.  
29)

第41條 (常任委員長) ①常任委員會에 委員長(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人을

둔다.

②常任委員長은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당해 常任委員中에서 臨時議長選舉의 예에 準하여 國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選舉한다. <改正 94. 6. 28>

③第2項의 選舉는 國會議員總選舉후 最初集會日부터 3日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選出된 常任委員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까지 실시한다. <新設 94. 6. 28>

④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⑤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辞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 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辞任할 수 있다.

第42條 (專門委員과 公務員) ①委員會에 委員長 및 委員의 立法活動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4. 6. 28>

②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③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查, 國政監查, 國政調查 기타 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查·研究를 행한다. <新設 94. 6. 28>

④專門委員은 第3項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新設 94. 6. 28>

⑤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第43條 (專門家의 활용) ①委員會는 그 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하는 案件의 審查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2人이내의 專門家를 審查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查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 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查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결격사

## 第3編 選舉·政黨 第2章 選舉·國民投票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때까지 그 選舉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舉管理委員會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한 때에는 代行할 選舉管理委員會와 그 業務의 범위를 지체없이 公告하고,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4條 (任期開始) ①大統領의 任期는 前任大統領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者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舉와 朝位로 인한 選舉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된다.

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總選舉에 의한 前任議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議員의 任期가 開始된 후에 실시하는 選舉와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舉에 의한 議員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舉와 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舉등)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새로 選舉를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第2章 選舉權과 被選舉權

第15條 (選舉權) ①20歲이상의 國民은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다.

②20歲이상의 國民으로서 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 현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는 그 區域에서 選舉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權이 있다.

第16條 (被選舉權) ①選舉日 현재 5年이상 國내에 居住하고 있는 40歲이상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舉權이 있다. 이 경우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기간과 國내에 住所를 두고 일정기간 外國에 滯留한 기간은 國내居住期間으로 본다. (改正 97·1·13)

②25歲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다.

③選舉日 현재 계속하여 60日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舉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舉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기간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合併 또는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改正 98·4·30)

④第3項의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住民登錄이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 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 1995. 1. 3.  
조례 제3호 ]

개정 1995.	2. 16	조례	제 134호
개정 1995.	7. 28	조례	제 153호
개정 1996.	5. 17	조례	제 190호
개정 1998.	7. 18	조례	제 328호
개정 1998.	11. 20	조례	제 3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 7. 18>

1. 의회운영 위원회 6명
2. 총무 위원회 6명
3. 산업도시 위원회 7명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7. 18>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라. 타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총무위원회
  - 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총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도시위원회
  - 가. 산업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실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1991.4.8.조례 제759호)와 제천군의회위원회조례(1994.4.6.조례 제7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2. 16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28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7 조례 제190호)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6조의 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7. 18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20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사회 제1장 자치행정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1996. 2. 16 ]

조례 제132호  
개정 1996. 3. 8 조례 제 181호  
개정 1998. 12. 30 조례 제 352호  
개정 1999. 6. 21 조례 제 383호  
개정 1999. 9. 17 조례 제 4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 기구로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5조(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① 총무사회국에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1. 의식 및 행사
2. 보안업무
3. 여론조사 및 여론의 시정 반영
4. 공무원 정현원 및 인사관리
5. 공무원의 임명, 표창, 징계, 소청
6. 의료보험, 연금
7. 공무원 복리후생 및 교육
8. 기구, 직제, 사무분장
9. 하급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10.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
11. 문서 수발 및 통제
12. 문서보존관리 및 공인관리
13. 인장업 및 국제협력 업무
14. 행정정보 공개운영
1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